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 미 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3. 10.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드론의 비행, 전파 관련 사전규제 등의 면제·간소화를 통하여 드론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 촉진을 위해 지정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전문성 및 경쟁력 제고
-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의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및 전문기술 활용을 통한 시간 및 비용 절감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

2. 주요내용

가. 사무명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1) 사업위치 : 구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선산읍 ~ 장천면 일원)

2) 예산액 : 2,200백만원(시비 2,200)

※ '23. 7억원(공기관 위탁), '24. 10억원(민간위탁), '25. 5억원(민간위탁)

3) 사업내용

- 드론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드론 활용 실증 사업(산림, 배송, 하천, 교통 등) 추진

나. 추진근거

-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2)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 3)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별표1(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 4)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5)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5조(과학기술 진흥사업 등)
- 6)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9조(관련사업 추진)

다. 위탁사무

- 1)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전반
- 2) 참여기업 및 실증사업 관리, 세미나·보고회 개최
- 3) 운영 인력 채용 및 관리, 기타 협의 필요 사항 등

라. 위탁기간 : '24. 2. ~ '25. 6.

마. 위탁조건

- 1)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책임성, 공신력이 높고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노하우를 보유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 2)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관련분야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

- 1)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가) 선정 심의위원회

- 구성 근거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 구성 인원 : 6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장 1 포함)
- 위원 자격
 - 위탁 사무를 소관하는 부서장 또는 실·국·소장
 -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사회적 경제 전문가
 -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평가내용 :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종합 심사

가) 평가항목(안) ※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준용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 량 적 평 가	▪ 관련사업 수행경험, 경영상태 ▪ 기술인력 보유상태 또는 핵심인력 ▪ 신인도, 용역근로자보호지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0
	정 성 적 평 가	▪ 기술·지식능력 ▪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 상호협력 관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60
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 가	▪ 별도 평점산식으로 산출	20

3)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 자료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사. 성과평가결과 : 해당없음

아.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3. 부서의견

- 드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전문성 및 특수성을 감안, 민간위탁하여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 2023년 제2차 구미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산업발전법」

제5조(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장기 산업 발전전망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및 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2.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
3. 산업 간 연관 효과

□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산업통상자원부고시)

<별표 1>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 산업분야 목차 >	
01. 탄소/나노융합 2	19. 이차전지 33
02. 섬유의류 4	20. 생산시스템 34
03. 화학공정소재 6	<u>21. 로봇 37</u>
04. 세라믹 7	22. 자동차 38
05. 바이오 9	23. 조선해양 42
06. 금속재료 10	<u>24. 항공 45</u>
07. 생산기반 11	<u>25. 드론 46</u>
08. 반도체 14	26. 에너지자원 47
09. LED/광응용 18	27. 원자력 51
10. 디스플레이 19	28. 신재생에너지 53
11. 네트워크 24	29. 전력 55
12. 이동통신 28	30. 기반SW컴퓨팅 .. 57
13. 방송 29	31. 융합SW 58
14. 전파위성 29	32. 임베디드 SW 59
15. 정보가전 30	33. 지식서비스 59
16. 스마트서비스 31	34. 플랜트엔지니어링 .. 61
17. 정보보안 31	35. 청정기반 62
18. 의료기기 32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정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 「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지식기반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화장품 및 뷰티기기의 제조·개발 산업

나. 이·미용업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

다. 그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
·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4. “탄소산업”이란 탄소원료(원유, 가스, 석탄 등을 말한다)를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탄소섬유, 활성탄소, 카본블랙, 인조흑연,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등 탄소계
소재 생산

나. 가목의 소재를 항공기, 자동차,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활용

5. “물산업”이란 「수도법」 제3조제20호에 따른 공업용 수도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

나. 장치·기기 및 약품의 제조·판매

다. 연구·기술개발

라. 교육 및 컨설팅

6. “부품·소재산업”이란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 1에 명시된 업종을 말한다.

7. “신성장동력산업”이란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가는 새로운 산업이나 신기술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의 “산업기술혁신사업과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5년 단위 산업기술혁신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
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의 민·군기술협력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마.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차세대 5G이동통신 등으로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과학기술 진흥사업 등) ① 시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과학기술인 단체 등(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과학기술진흥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기반 및 과학문화시설 확충

2. 다음 각 목의 산업 육성

가. 첨단·지식기반·뷰티·탄소 및 물산업

나. 부품·소재산업

다. 신성장동력산업

3. 중소기업 신기술·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장이 동시에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관련사업(이하 “관련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력 육성사업

2. 문화 확산사업

3. 혁신역량 등 강화·활성화사업

제9조(관련사업 추진) 시장은 관련사업의 효율적 병행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해당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인프라 구축, 실증사업 추진, 관리 인력 채용 등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을 위한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 분야 선도 지자체 예산(안)에 준하여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700 (공기관위탁)	1,000	500	-	-	2,2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700	1,000	500	-	-	2,200
민 간	-	-	-	-	-	-
기 타	-	-	-	-	-	-
합 계	700	1,000	500	-	-	2,200

5. 부대의견 : 운영 여건에 따라 예산규모는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25. 6. 이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재지정 여부에 따라 지속 추진

6. 작성자 : 미래도시전략과 항공산업팀 이수빈(☎ 480-257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 도	항 목	계(천원)	산 출 기 초
2023	합 계	700,000	
	인건비	17,000	- 2,125,000원 * 2명 * 4월(9~12월) = 17,000,000원
	운영비	35,000	- 경상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VAT = 23,000,000원 - 세미나 및 사업발굴 = 10,000,000원 - 관제시스템 운영비 = 2,000,000원
	사업비	648,000	- 실증사업 추진 45,000천원 * 8개 = 360,000,000원 - 관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1식 = 213,000,000원 - 이·착륙장 조성 25,000천원 * 3개소 = 75,000,000원
2024	합 계	1,000,000	
	인건비	54,000	- 2,250,000원 * 2명 * 12월 = 54,000,000원
	운영비	92,000	- 경상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VAT = 46,000,000원 - 세미나 및 사업 발굴 = 35,000,000원 - 관제시스템 운영비 = 5,500,000원 - 드론 스테이션 운영비 = 5,500,000원
	사업비	854,000	- 실증사업 추진 64,000천원 * 11개 = 704,000,000원 - 이·착륙장 조성 25,000천원 * 2개소 = 50,000,000원 - 드론 스테이션 구축 50,000천원 * 2식 = 100,000,000원
2025	합 계	500,000	
	인건비	55,200	- 2,300,000원 * 4명 * 6월 = 55,200,000원
	운영비	60,800	- 경상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VAT = 44,800,000원 - 세미나 및 평가대비 = 5,000,000원 - 관제시스템 운영비 = 5,500,000원 - 드론 스테이션 운영비 = 5,500,000원
	사업비	384,000	- 실증사업 추진 48,000천원 * 8개 = 384,000,000원

소 관 부 서		미래도시전략과
입 안 자	과 장	강 호 근
	팀 장	임 진 환
	담 당 자	이 수 빈 (480-2572)